

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고찰

이 기 현*

국문요약

일수벌금형제도는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벌금일수를 결정하되 일일 벌금액은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벌금부과방식이다. 일수벌금형제도가 희생평등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1. 이 제도는 동일한 행위를 했더라도 사람마다 벌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평등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2. 벌금액을 정할 때 왜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왜 경제적 고통을 형벌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3. 이 제도의 성패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의 정확한 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달려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소득과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하는 예산으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면 이 제도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뿐이다.

4. 자유형과는 달리 벌금은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피고인이 감당한다는 보장이 없다.

5. 판사들이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불신할 경우, 이 제도는 거꾸로 판사가 이미 정한 벌금 총액을 벌금일수와 일일벌금액으로 분해하는 번잡성만 초래할 수도 있다.

일수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의 문제점만을 제거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지닌 제도일 뿐 아니라 실제로는 이념의 실현도 쉽지 않다고 짐작되므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본다.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I. 서론

1. 형벌체계상 벌금형의 지위

현행 형법상의 형벌을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자격형으로 분류할 때 실제로는 자유형과 재산형이 형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활용 빈도로만 본다면 즉결심판사건을 제외하더라도 기소사건의 80% 이상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어 재산형을 주형이라고 부를만 하지만, 벌금형은 범죄자를 그대로 사회에 풀어두는 형벌이어서 피해자의 복수심을 해소시켜주는 응보기능이나 일반인에 대한 경고기능이 약할 뿐 아니라 범죄자의 악성을 순화하는 개선기능, 위험한 범죄자의 재범을 일정기간 차단하는 사회방위기능 등 형벌의 주요 기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형벌제도의 중심은 자유형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자유형의 범죄자 개선기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의혹이 증폭되면서 자유형을 통한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기대는 감소한 반면, 오히려 범죄자의 교도소내 악풍 감염, 범죄자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의 파괴와 낙인효과 등에 따른 ‘탈사회화’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범죄학적 추세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는 한, 특히 범정이 비교적 가벼워서 사회방위의 요구가 작고 형기가 짧아서 개선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의 활용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수벌금형제도의 의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액벌금형제도(Gesamtsummungs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총액벌금형제도란 벌금을 부과할 때 단순히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만을 결정하여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벌금형에는 다른 형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생명을 박탈하는 경우는 물론, 자유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에도 기간이 동일하다면 고통도 동일하다고 간주하는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형벌기간이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도록 하기만 하면 형벌의 공평성의 척도인 ‘희생평등의 원칙(Opfergleichheitsprinzip)’

이나 그 정당성의 근거인 ‘책임주의(Schuldprinzip)’가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하지만 벌금형은 불법과 책임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범죄자마다 경제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제적 능력이나 자산이 적은 사람이 더 큰 고통이나 타격을 받게 되어 희생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반대로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여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차등화하면 벌금액이 불법이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주의에 어긋난다. 그밖에 벌금형은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액수가 과중하면 그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거나 대체자유형으로 전환되어 벌금형의 장점을 살릴 수 없고, 액수가 경미하면 형벌효과를 거의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벌금형 제도의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안된 것이 일수벌금형제도(Tagessatz system)이다. 일수벌금형제도는 행위의 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의 크기에 따라 벌금 일수(罰金 日數)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일일 벌금액(一日 罰金額)을 정한 뒤 이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하는 벌금부과 방식이다.¹⁾

일수벌금형제도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등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시발로, 1975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1983년에는 프랑스에 도입되었으며, 그밖에 노르웨이, 헝가리, 포르투갈, 스위스, 폴란드 등 적지 않은 나라에서 시행중이다. 일수벌금형제도를 취할 경우 수형자 명부에는 벌금일수만을 기록함으로써 행위자의 책임정도를 외부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책임주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일일벌금액이 차등화 되기 때문에 희생평등의 원칙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론적, 이념적으로만 본다면 일수벌금형제도는 종래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대략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총액벌금형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벌금형의 형벌개별화를 이룩함으로써 벌금형의 정의를 실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독일처럼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납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즉시 또는 일시납부가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납이나 분납 등의 납부완화를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3. 문제의 제기

이제 눈길을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독일형법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에 일수벌금형제도가 알려진 것은 오래 전의 일이고, 우리나라 형법개정작업이 진행되었던 1980년대 후반에 이미 형사법개정특별심의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여부가 검토된 바 있었으며, 도입을 결정했다더라면 형법 부분 개정시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이념적으로 앞서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한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영미법 국가의 종주국인 영국은 1992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6개월간 시범실시후 일수벌금형제도를 폐지하고 옛날로 되돌아갔으며, 미국은 일찍이 1988년 이래 일부 지역에서 본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전면실시는 요원한 실정이다.²⁾

이미 앞에서 살펴본 총액벌금형제도의 문제점이나 일수벌금형제도의 이론적 강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한 사정은 모든 나라가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최초 도입후 이미 9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 이유는 ① 본 제도가 법문화 또는 사회적 여건이 다른 모든 국가에 반드시 적합한 것이 아니거나 ② 본 제도의 실시에 번거로운 준비작업과 인력이나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거나 ③ 본 제도에 총액벌금형제도와는 다른, 혹은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일수벌금형제도의 구체적인 입안과정이라든가 적정벌금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안이함은 일수벌금형제도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여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쳐 입안되는가, 적정벌금액 산정시 검토사항은 무엇이고 각각의 사항에 어떤 쟁점이 있는가에 대한 소개가 미흡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미국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³⁾ 아울러 일수벌금형제도의 이념적 우월성에 가려서 다소간 과소평가

2)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같은 영연방국가에서도 일수벌금형제도를 시행중이라고 한다.

3) 이 글에서 미국의 일수벌금형제도에 관하여 주로 참조한 글은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How to Use Structured Fines(Day Fines) as an Intermediate

된 일수벌금형제도의 단점 내지 문제점도 짚어보고자 한다.

II. 일수벌금형제도의 활용

1. 일수벌금형제도의 장점⁴⁾

앞에서 일수벌금형제도가 이념적으로 볼 때 책임주의와 회생평등의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킴으로써 벌금형의 배분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제 이 제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이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억제효과의 증대

일수벌금은 범죄자들의 경제적 사정이 서로 다르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게 함으로써 법원에게는 ‘형벌로서의 의미있는 금전적 제재’를 과할 수 있게 하고, 범죄자에게는 ‘범죄에 걸맞는 경제적 타격’을 입힘으로써 특히 부유한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저지하는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2) 벌금형의 공정성 증대

총액벌금은 벌금액이 행위별로 고정되므로 부유한 범죄자들에게 의미를 가지기에는 너무 약소하고, 반대로 가난한 범죄자들에게는 납부할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총액벌금은 활용하기에 편리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형벌로서의 벌금형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잘 고안된 일수벌금형제도는 법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주는 작용도 할 수 있다.

Sanction(1996) ; Turner, Susan and Joan Petersilia, Day Fines in Four U.S. Jurisdictions(1996) 이다. 미국의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일수벌금형제도 설계과정에 대한 책자로 저자의 의견보다는 사실에 대한 소개 위주로 되어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길게 인용하였다.

4)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앞의 책, 2면 이하.

3) 단기자유형의 폐해 방지

자유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총액벌금의 상한액이 너무 낮으면 범정이 무거운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를 꺼리고 자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일수벌금형제도는 이러한 경향을 완화시키고 벌금형의 활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제한된 시설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

미국에서 벌금은 무감독 보호관찰(unsupervised probation)보다는 무겁고 자유형보다는 가벼운 이른바 중간적 형벌(intermediate sanction)이다. 일수벌금형제도는 집중적 보호관찰, 전자감시에 의한 가택구금, 일일보고센터⁵⁾, 약물남용 치료센터 입원 및 통원 등 여타의 중간적 제재들에 비하여 운영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게다가 일수벌금이 단기자유형을 대체하는 만큼 귀하고도 값비싼 자원인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 자원을 공공의 안전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 국가수입 증대

일수벌금이 감금이나 감독에 많은 비용이 드는 여타의 형사제재를 대체할 경우 국가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순수입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운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의 시범실시 결과에 따르면 일수벌금이 총액벌금에 비하여 벌금수입을 올리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⁶⁾

5) 일일보고센터는 주로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일종의 집중 감시 프로그램이다. 일일보고센터에서는 사회봉사, 구직, 철저한 마약 검사 등의 이행여부는 물론, 고용 및 주거상태를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에 대하여 추가적 감독을 한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범죄자들을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에 길들이는 것이며, 범죄자들은 감독관이 지정한 시간에 직접 센터에 출석하여야 한다. 대상자들은 정해진 생활계획표를 지키고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원한다면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할 수 있다.

6) 이는 격리, 개선, 일반예방 효과가 없는 벌금은 바람직한 형벌이 아니라고 보고 경미한 범죄에 한해 비교적 소액을 부과해 온 미국 형벌제도의 전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정봉휘, '일수벌금형제도의 비교고찰', 형사법연구 제4호, 1991, 203면 이하.

2. 일수벌금형제도의 성과

위에서 일수벌금형제도의 현실적 장점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특정 국가가 일수벌금형제도를 채택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제도상 허용하는 최대 벌금일수를 보면 대개 짐작이 가능하다.

국 가	범죄 1건당 벌금일수	일일 벌금액
덴마크	1 (下限)~60 (上限)	제한 없음 2~5,000 유로 최대 3,000 프랑
핀란드	1~120	
스웨덴	1~120	
독 일	5~360	
스위스	2~360	
프랑스	1~360	
스페인	1~720	

최대 벌금일수를 120일 정도로 짧게 잡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단순히 ‘벌금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 등 최대벌금일수를 360일 혹은 그 이상으로 규정한 나라들은 법체계상 자유형에 처해야 할 중죄⁷⁾ 또는 그에 근접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일수벌금형제도를 자유형의 대안으로 사용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은 형벌제도 개혁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 조치로 볼 수 있다.

자유형 대신 일수벌금을 활용하는 정책은 당시 서독에서 두드러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968년과 일수벌금형제도 시행 이듬해인 1976년의 통계를 보면 6개월 이하 단기자유형의 선고건수는 11만 건에서 1만 건으로 90%나 감소하였다. 독일 등 여러 서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중대한 범죄의 일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였다. 가령 독일에서는 재산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4분

7) 여기서 중죄(felony)란 단순히 무거운 죄라는 뜻이 아니라 범죄를 중죄, 경죄, 위경죄로 3분하는 서양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인 중죄의 처벌범위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서부터 최고 사형이다.

의 3과 폭행 및 상해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3분의 2에 대하여 일수벌금만이 선고되었다.

미국의 일수벌금형제도 도입 목표는 시행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를 자유형의 대안으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서도 그 속사정은 독일과는 달라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절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 및 유지비용 절감에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⁸⁾

미국에서는 1988년 뉴욕 리치먼드郡의 스테이튼(Staton) 섬에서 일수벌금제가 시범 실시되었다. 실시 목적은 서유럽의 일수벌금형제도를 스테이튼 섬만을 관할하는 법원에 적용시켜 그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벌금액을 산정하는 2단계 과정의 적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평균 벌금액이 206달러에서 258달러로 25% 증가한 외에, 범죄자의 사정을 고려한 징수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징수율도 76%에서 85%로 증가하여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⁹⁾

스테이튼 섬에 이어서 아리조나 주의 Maricopa郡, Connecticut주, Iowa주, Oregon주에서도 일수벌금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구조나 작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실무자들은 일수벌금이 총액벌금보다 공정한 제도라는 점에서 본 제도의 기본 개념에 호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일수벌금형제도는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타의 중간적 제재와 아울러 ‘합리적 양형정책의 전반적 발전’이라는 이념적 맥락 안에서 그 일부분으로서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다.¹⁰⁾

8) 미국에서는 일수벌금(Day Fines)이라는 용어 대신 ‘단위벌금(Unit Fines)’ 또는 벌금단위와 단위당 벌금액으로 ‘구조화된 벌금(Structured Fine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마 이는 미국에서는 벌금을 미납해도 당연히 미납일수만큼의 자유형으로 전환되지 않는 때문인 것 같다. 미국의 벌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과 다른데, 벌금을 형별로 인식한 역사도 짧고, 벌금형을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만 활용하고자 하며, 벌금액이 행위별로 거의 고정되다시피 하여 융통성이 적고, 미 연방최고법원은 범죄자가 가난으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에 수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9)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앞의 책, 3~4면.

10) 위의 책, 5면.

Ⅲ. 일수벌금 프로그램 개발

무릇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그 지역의 형사사법시스템, 법률체계, 전통, 법문화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일수벌금형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일수벌금형제도 입안과정에서는 양형정책과 선택형으로서 일수벌금의 잠재적 역할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비록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일수벌금프로그램 개발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입안 참여자¹¹⁾

일수벌금형제도가 효과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각 형사사법기관 지도자들, 그밖에 제도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지지 내지 최소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군(郡)에서 이를 실시하려 할 경우에도 ①관할 법원의 법원장 기타 회의를 주재할 법관, ②검사, ③공익 변호사¹²⁾와 일반 변호사 대표, ④법원사무관, ⑤판결전 조사기관 대표, ⑥보호관찰관 기타 사회내 처우기관의 장, ⑦치안책임자와 교도관, ⑧군 행정기관의 대표들 등 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일수벌금형제도는 여타의 중간적 제재와 호환성이 있는 만큼, 이들을 일수벌금제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중간적 제재의 개발에도 함께 참여시켜 벌금과 다른 선택형을 어떻게 연결하여 이용할 것인가도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일수벌금프로그램 설계과정에서는 법원 측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미국에서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뿐만 아니라 법원사무관이 벌금지수사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제도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둘째, 법관들은 신분보장과 중립적 역할로 인해, 양형의 영역에서 정책 결정과 프로그램 구체화에 앞장설만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¹³⁾

11) 위의 책, 78면.

12) 미국의 공익변호사(public defender)는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변호사 비용 지불능력이 없는 가난한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률적 상담과 소송상 변호를 하는 변호사이다. 공익변호사는 사선변호인과는 달리 연방, 주, 또는 군에서 고용한 사람이거나, 정부가 비용을 대는 비영리법인을 위하여 일한다.

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수벌금 프로그램의 대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법원장, 기관장, 기타 여러 정책결정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실무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는 단계에서는 형사사법 처리과정에 관계된 법원, 검찰청, 기타 기관의 부하직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정책결정 집단(policy group)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임무중 하나는 벌금제도의 일상적 운용에 정통한 사람, 상세한 계획수립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일수벌금형제도의 구체적 계획을 짤 계획수립 집단(planning group)을 만드는 것이다.

2.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¹⁴⁾

일수벌금에 관한 상세계획 수립에는 양형 패턴, 벌금징수방법, 그리고 현행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1) 양형 관행

정책결정자와 계획수립자들은 각종 범죄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형벌과 형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정보는 일수벌금형에 처할 범죄와 범죄자의 종류를 식별해내고, 일수벌금 도입으로 초래될 비용절감 기타 형벌체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실제 일수벌금을 도입함으로써 양형 관행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내는데 매우 중요하다. 일단 초기 계획단계에서 기존의 양형 관행에 관한 정보는 일수벌금형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을 정하는 열쇠가 된다. 즉 유죄판결에 따른 형벌과 범죄자의 특징을 분석해볼 때,

① 현재 오직 ‘벌금형’만을 선고받거나 ‘감독이 전혀 혹은 거의 없는 보호관찰’을 선고받는 사건들은 명백히 일수벌금형 프로그램에 포함될 범주에 속한다. ② 현재 자유형 혹은 감독부 보호관찰이 선고되고 있는 사건 중 일수벌금에 처하기에 적절한 사건들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수벌금

13) 우리나라에서 일수벌금형제도를 구상한다고 해도 법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틀림이 없지만, 약식기소와 벌금 징수사무를 담당하는 검찰의 역할이 미국보다는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14)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앞의 책, 8~10면.

형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현재 벌금과 다른 형벌과 병과되어 선고되지만, 자유형이나 감독부 보호관찰이 일차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사건들에 대해 벌금만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재를 일수벌금의 영역에 끌어들이어 벌금총액을 재설정해야 한다.¹⁵⁾

2) 벌금 징수방법과 효율성

벌금형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벌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미납시에는 강제로 이행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력부족 등으로 집행상 어려움이 많다. 특히 벌금 체제를 일수벌금형제도로 변경한 경우 그것이 제도 운영비용과 벌금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프로그램 시행 전에 미리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너무나 많은 예측불가능한 요소들이 그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금 납부율이나 완납기간 등에 관한 정보와 벌금 징수업무에 관한 기본 자료가 있다면 제도 변경의 영향은 운영비용과 벌금수입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들을 통해 사후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자료의 사후적 분석을 통하여 ① 법원이 부과한 일수벌금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징수하기 위해 어떠한 운영상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고, ② 일수벌금형제도가 당해 지역의 벌금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으며, ③ 일수벌금형제도 시행후 징수효율을 모니터하고 평가할 기준선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징수율이 낮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징수정책과 징수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프로그램 시행계획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일수벌금 프로그램의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¹⁶⁾

계획수립자들의 주요 임무중 하나는 일수벌금 프로그램의 구체적 목표

15)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일수벌금형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여전히 범죄유형별로 벌금상한액(fine ceiling)이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주마다 등급이나 액수는 다르지만 1996년도에 아리조나 주의 범죄유형별 벌금 상한액은 중죄 150,000 달러, 1급 경죄 1,000 달러, 2급 경죄 750달러, 3급 경죄 500달러로 제한되었다고 한다. 결국 일수벌금 부과대상이 되는 범죄를 확대하려면 벌금상한액을 높이는 것이 사실상 선결조건이 된다.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앞의 책, 12면 참조.

16) 위의 책, 10~11면.

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특히 일수벌금형제도같은 혁신적 프로그램의 경우 목표수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목표는 프로그램으로부터 기대되는 결과를 표현하고, 실무가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공통적 지향점이 되며,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와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밖에 목표 설정과정은 정책결정자에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와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변화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계획수립자들이 목표를 수립할 때 밟아야 할 첫 단계는 ‘일수벌금형제도를 양형시의 선택수단으로 도입함으로써 성취해야 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억제효과의 증대, 벌금형의 공정성 증대, 단기자유형의 폐해 방지, 제한된 시설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 국가수입의 증대 등 이미 앞에서 살펴본 일수벌금형제도의 잠재적인 장점들은 본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된다. 설정된 목표들은 달성여부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당해 지역은 정보수집 체계를 통해 일수벌금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대체형벌의 이용가능성

독일의 경우 징수할 수 없는 벌금은 자유형으로 대체된다. 이미 벌금이 일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환산방법은 매우 간단해서 1일분 일수벌금을 1일의 자유형으로 대체하면 된다.¹⁷⁾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당해 범죄자의 경우 벌금만으로도 형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법원 스스로의 판단을 뒤엎는 일이며, 정말로 가난해서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자의 반감을 악화시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자유형의 폐해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금 미납을 눈감아 버린다면 벌금을 성실히 납입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법집행의 엄정성이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취업곤란으로 인하여 벌금을 내지 못했다면 당해 범죄인을 관영·공영 직장에 취업시켜 임금의 일부를 벌금으로 충당하거나, 적당한 직장을 찾을 수 없다면 사회봉사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자유형으로의 회귀는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벌금 미납에 대한 전통적인 대체형벌은 벌금을 대신하는 의

17) 독일형법 제43조.

미, 혹은 범정부적으로 간주되는 자의적인 벌금미납행위를 처벌하는 의미로서의 교도소 감금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도소 감방은 귀한 자원에 속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벌금을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범죄자의 경제적 타격이나 개인적 자유라는 관점에서 일수벌금에 비례하는 법령상의 다른 제재들을 사용할 권한이 필요하다.¹⁸⁾ 미국에서는 주로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일일보고센터(Day Reporting Centers), 가택구금(Home Confinement), 중간처우소(Halfway Houses), 시설의 노역중사(Work Release)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¹⁹⁾

IV. 적정 벌금액 산정 방법

벌정형의 범위내에서 단순히 담당판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와 구별되는 일수벌금형제도의 핵심적 특징은 각 사건에서 벌금의 총액을 정하는 절차의 구조적 성격이다. 이 구조에는 범죄를 상대적 중대성에 따라 서열화하여 정해 놓은 범죄별 벌금일수 내지 벌금단위(unit scale)와 행위자에 대한 일일벌금액 사정체계(valuation system)라는 두 가지의 핵심요소가 있다.

1.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벌금일수표 개발²⁰⁾

벌금일수는 일수벌금형제도의 기초를 이룬다. 그 단위는 각종 범죄의 상대적 중대성에 대한 계획수립자들의 합의의 산물이다. 미국의 일수벌금형제도 시범 실시 지역에서 벌금단위의 개발은 통상 다음의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18) 일수벌금은 범죄별 벌금일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제재와의 '교환비율'을 책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벌금일수를 사회봉사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하고,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법원에 그 시간만큼의 사회봉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앞의 책, 21~22면.

19) 위의 책, 37~40면.

20) 미국, 특히 Staten 섬의 범죄별 벌금일수표 개발과정 소개에 관해서는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앞의 책, 15~17면 참조.

1) 양형관행 분석

계획수립자들은 과거 유죄판결에 따라 형이 선고된 모든 사건들의 표본을 분석하여야 한다. 사건이 많지 않은 소규모 법원에서는 표본보다도 모든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좀더 큰 법원에서는 표본을 무작위추출해도 무방하지만, 표본의 크기는 당해법원이 취급한 각종 범죄 사건들을 빠짐없이 포함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이 샘플을 분석하여 ①법원이 처리하였던 범죄들과,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 행태, ②특정 범죄의 상대적 빈도, ③특정 범죄에 부과된 형벌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조사한다. 이러한 분석은 그 지역의 개략적 양형 관행을 알아보고, 일수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2) 중대성에 따른 범죄 서열화

일수벌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들의 범위를 확인한 뒤에는 그것들을 범죄의 상대적 중대성에 따라 서열화하여야 한다. Staten 섬에서 이 작업은 판사 세 명, 검사, 사선변호인 및 공익변호사 대표로 구성된 핵심 계획수립자들이 담당하였다. 다른 시범실시지역도 범죄 서열화에는 실무가들 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하여 비슷한 공동작업을 하였다. 서열화 절차에서는 각종 범죄, 더 좁게는 각종 범죄행태의 상대적 중대성에 관한 이견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계획수립집단의 이견은 특정범죄의 상대적 중대성, 그리고 특정범죄를 다른 범죄보다 중하거나 경하게 평가하는 이유에 관한 상위 정책결정 집단의 토론을 통해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3) 필요한 경우 범죄의 세분화

형법 규정들은 대부분 내용이 추상적·일반적이어서 단일범죄의 범주 안에 구체적인 불법의 정도나 구체적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행태들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그 범죄를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령 Staten 섬의 계획수립자들은 3급 폭행죄를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나누었다.

①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에, 혹은 공격자만 피해자를 알고 피해자가 더 허약하거나 취약한 경우에 발생한 중대한 상해, ②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에, 혹은 공격자만 피해자를 알거나 또는 피해자가 더 허약하거나 취약한 경우

에 발생한 가벼운 상해, ③ 아는 사람들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중대한 상해, ④ 아는 사람들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가벼운 상해

4) 일수 범위의 설정과 범죄별 일수 할당

미국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일수벌금 프로그램은 Staten섬에서 시행했던 것을 본뜬 벌금단위를 사용하였는데, 벌금일수의 범위는 최저 5단위부터 과거 법원이 처리했던 경죄 중 가장 중대한 범죄에 부과되는 최고 120단위까지이다. 물론 일수 범위를 꼭 5부터 120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죄까지도 벌금형 대상에 포함시켰던 Maricopa군의 프로젝트에서는 그 범죄들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최저 5단위부터 최고 360단위까지의 범위를 설정했다. 중요한 것은 일수벌금을 적용할 범죄 중 당해 법원이 취급했던 가장 가벼운 범죄부터 가장 무거운 범죄까지 모두 포괄하기에 충분한 일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각종 범죄들을 중대성에 따라 서열화해놓은 결과에 따라 각각의 범죄에 대해 단위추정치(presumptive number of units)를 할당한다. 5부터 120까지의 단위를 사용한다면 서열상 가장 가벼운 범죄에 5라는 단위 추정치를 매기고 가장 무거운 범죄에는 120 단위를, 그리고 기타 범죄들에 대해서는 그 사이의 어떤 단위를 매기게 될 것이다. ‘추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일수벌금형제도가 너무 경직되게 운영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추정치는 협상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상향 혹은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각각의 범죄에 대해 특정한 수치를 매기기보다 일정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판사에게 개별 사건에 나타난 감경 혹은 가중 사유를 참작할 여지를 부여할 수도 있다. Staten섬의 경우 체포항거죄에 대한 단위 추정치는 25로 하되 21에서 29까지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2. 일일 벌금액 사정²¹⁾

1) 기본지침

각 범죄자에 합당한 일일벌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범죄별 벌금일수를

21) 미국의 일일벌금액 사정방법에 대한 소개는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앞의 책, 1719면 참조.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일일 벌금액 역시 벌금 총액, 나아가 범죄자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일수벌금형제도의 기본적 취지에 비추어 일일 벌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적 지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① 벌금을 유일한 혹은 일차적인 형벌로 부과하겠다는 결정은 당해 범죄자의 처벌 목적을 달성하는데 감금이나 감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범죄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벌금 총액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일일 벌금액 사정에는 수입의 감소, 그리고 특히 비교적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경제적 압박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 총액은 범죄자의 빈부를 막론하고 대략 동일한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무정보 획득과 비밀보호

법원은 일일 벌금액을 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입 기타 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보, 즉 재무정보가 필요하다. 일일 벌금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다. Maricopa에서는 판결전 조사요원이 통상적으로 수집한 수입평균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였다. Oregon에서는 국선변호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빈곤증명서 발급공무원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Des Moines와 Bridgeport에서는 일수벌금 담당직원이 직접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대개 정보 수집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만, 가끔 정보의 입증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Bridgeport에서는 입증에 실패할 경우 그 사건은 일수벌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²²⁾

재무정보는 기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비밀보호정책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원규칙으로 해 둘 필요가 있다.

3) 일일 벌금액 사정기준

미국의 일수벌금 프로젝트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과 스웨덴은 단위당 가액산정에 관해 서로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주로 단기자유형의 대안으로서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였던 독일은 ‘순

22) Turner, Susan and Joan Petersilia, 앞의 책, xxii,

수입 기준원칙'에 따라 범죄자의 일일 순수입(net daily take-home pay)을 일일 벌금액으로 삼는다. 범죄자의 총수입에는 근로소득, 영업소득, 공적·사적인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거래 기타 투자소득 등 합법적 활동을 통해 얻은 일체의 수입이 포함된다. 그리고 순수입이란 범죄자의 총수입에서 세금, 강제보험금, 실업보험금을 공제한 뒤 남은 액수를 말한다. 순수입을 소득을 얻는데 소요된 기간으로 나누면 일일 순수입을 알 수 있다.²³⁾

하지만 범죄자의 순수입 전부를 박탈하는 자체가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벌금일수가 길어질 경우 가족부양, 치료, 자녀교육 등에도 차질이 생겨 그 피해가 범죄자의 가족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정의 기준점 내지 출발점이 일일 순수입이라는 것일 뿐 실제로는 독일 법원도 범죄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양비 등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순수입에서 범죄자와 그 피부양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액수를 일일 벌금액으로 삼아서 독일에 비해 범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대략 범죄자의 연수입의 1/1,000 혹은 일일 수입의 1/4 정도로 잡되 피부양자 수, 세금, 그리고 중대한 부채나 자산을 감안하여 다소간 조정을 한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을 택하는 핀란드의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⁴⁾

핀란드는 범죄인의 월 순수입에서 최저생계비로 255유로를 공제한 뒤, 이를 60으로 나눈다. 다시 미성년 자녀 1명당 3유로씩을 공제한다. 자산이 8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위당 벌금액도 증액된다. 벌금 총액의 최소한은 6유로이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의 자산이 85,000유로 이하이고, 한달 수입은 1,500유로인데 세금 기타 징수금을 공제하면 1,000유로가 남는다고 하자. 1000유로에서 255유로를 공제한다. 755유로가 남는다. 755유로를 다시 60으로 나누면 약 12유로가 된다. 그가 두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6유로(3유로×2)를 다시 공제해야 하므로 일일 벌금액은 6유로가 된다. 그

23) 순수입은 날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일 순수입이란 평균의 개념이며 과거와 현재는 물론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미래의 수입도 고려된다.

24) 핀란드의 일일벌금액 사정방법에 대해서는 http://en.wikipedia.org/wiki/Unit_fines을 참조하였다.

리고 그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20일분의 벌금에 처해졌다면 벌금 총액은 양자를 곱한 120유로가 되는 것이다.

이 두 모델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정책목표와 프로그램 설계간의 관련성이고, 그 핵심은 일일 벌금액 사정방법이다. 독일 모델은 일수벌금을 ‘자유형의 대안’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의 정책목표 달성에 좀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이에 반해 스웨덴 모델은 어차피 자유형에 처하기 곤란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벌금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인 경우에 더 적합하다.

Staten섬에서는 당해 지역에 적합한 가액평가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독일과 스웨덴의 제도적 요소들을 병용하였다. 일일벌금액 사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범죄자의 일일 순수입(net daily income)을 확인하는 것인데, 일수벌금형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다른 지역도 대개 이 방법을 변형하여 채택하고 있다. 일일 순수입은 세후 임금, 사업소득, 복지수당, 실업수당 등 범죄자의 수입을 지급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다. 가령 주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주급을 7로 나눈 액수이다.

② 다음으로, 일일 순수입액에서 최저생활비와 가족부양비를 고려하여 일일벌금액을 하향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자 자신의 생활비로 수입의 15%, 그의 수입에 의존하는 배우자에게 15%, 역시 그의 수입에 의존하는 첫 번째 아이에게 15%, 그 뒤의 두 아이에게 10%씩, 그리고 아이가 더 있으면 한 명당 5%씩 하향조정했다.

③ 계획수립자들은 이것만으로는 아직도 벌금이 너무 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또다른 전면적 감경책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 이상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3을, 빈곤선 이하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1/2을 삭감해 주었다.²⁵⁾

미국에서는 위의 공식에 따라 조정 전의 일일 순수입을 왼쪽에 세로로, 그리고 피고인의 피부양자 수를 위쪽에 가로로 표시한 일일벌금액 산

25) Iowa주에서는 연방 빈곤선 이하의 수입에 대하여 특별 삭감을 해주는 대신 주거수당(일일 순수입의 40%), 필수품 수당(일일 순수입의 20%), 준필수품 수당과 피부양자 수당(피부양자가 한사람일 경우 일일 순수입의 40%, 추가 피부양자 네사람까지 10%, 여섯 번째 및 일곱 번째 피부양자에 대해 5%) 등을 제공하였다.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앞의 책, 18면.

출표(valuation table)를 만들어 활용한다. 각각의 난은 피부양자 기타 벌금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조정된 ‘일일 벌금액’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당해범죄에 대한 ‘벌금일수’만 곱하면 벌금총액을 알 수 있다.

이미 일수벌금형제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일벌금액 사정시스템은 아직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경제적 여건이 서로 다른 범죄자들 모두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도 징수가능한 벌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공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현실성 점검

벌금일수와 일일 벌금액 사정제도를 개발하고 나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계획수립자들은 계획을 재음미하고 그 기본적 건전성을 검증해보아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인, 법원 직원, 보호관찰관 기타 법집행 공무원 같은 핵심적 시스템 관계자 이외에도, 사회단체, 피해자 집단, 다른 관할구역의 경험많은 실무자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계획을 재음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 종류의 ‘범죄’와 수입, 직업, 식구 수가 서로 다른 ‘범죄자’를 가정한 테스트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해 부과되어야 할 벌금단위의 수와 그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서로 다른 범죄자들에게 과해지는 벌금의 총액을 알 수 있다.²⁶⁾

V. 일수벌금형 적용 관련 특수문제

1. 일수벌금형 부과에 적합한 행위유형

다른 형벌들과 마찬가지로 일수벌금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어떤 범죄가 일수벌금형제도 적용의 일차적 후보가 될 수 있을까를 정하기 전에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현실적 목표부터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일수벌금을 부과하기에 적합한 범죄,

26) 위의 책, 22면.

사용가능한 범죄, 부적합한 범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일수벌금 형제도를 도입한 뒤에도 종래의 총액벌금형제도를 병용할 수 있는가도 검토해 볼 문제이다.

(1) 앞에서 보았듯이 먼저 각종 범죄들을 중대성에 따라 서열화하고 적용대상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적용범위는 제도도입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중한 범죄를 일수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형법의 사회방위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법의식에도 반하는 반면, 일수가 며칠 되지도 않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 과정을 생각할 때 인력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의 중죄, 경죄, 위경죄와 같은 전통적인 분류기준도 없고, 독일처럼 질서위반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중대성 서열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형법 이외에 수백개의 특별형법과 행정형법이 법정형을 경쟁적으로 인상해놓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2) 본 제도를 시범 실시한 Iowa와 Oregon주에서는 일수벌금 선고사건의 상당부분이 교통범죄였다고 한다. 미국 법원에서 일수벌금은 자유형을 대체하지 못하고 교통과실범같은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범죄에만 일수벌금을 제한적으로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과실범은 자유형을 통해 교정해야 할 만한 범죄적 악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벌금형에 적합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한 과실에 대해서도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과실범이나 기술적인 성격의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다소 획일적인 총액벌금형을 존치하고 고의범이나 윤리적 성격의 비교적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만 일수벌금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범죄를 수단에 따라 폭력적인 범죄와 비폭력적인 범죄로 나눈다면 비폭력적인 범죄에 대해서 일수벌금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폭력적인 범죄는 일반인들이 다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억제 내지 사회방위 차원에서 벌금보다는 자유형이 적합할 것이다.

(4) 범죄를 동기에 따라 곤궁범과 이욕범으로 구분한다면 이욕범이 일

수벌금형을 부과하기에 적당할 것이다. 곤궁범은 곤궁이 원인이 된 불가피한 범죄라면, 이욕범은 타산적인 범죄이므로 체포확률과 벌금형의 액수를 감안할 때 범행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범죄자 스스로 범행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종래의 양형관행을 전면 조사해 볼 필요도 있을 듯 하다. 이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제로 어떤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많이 사용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형법상 자유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벌금액의 상한설정이 주먹구구식이어서 어떤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자유형은 낮는데 벌금형은 높거나, 두 범죄의 자유형은 다른데 벌금형은 같거나, 범죄 유형별로 자유형 1년당 벌금액에 차이가 큰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자유형의 기간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 양형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2. 특수한 범죄자에 대한 일일벌금액 사정²⁷⁾

1) 저소득 범죄자

범죄자가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약소하거나 아예 없어서 사회보장연금, 실업수당, 장애자 수당 등에 의존하여 생활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이고 합법적이기만 하다면 그 수입을 기초로 일수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저소득 범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았고, 벌금 납부율도 높았다. 물론 극빈자에게까지 벌금을 과해서는 안되겠지만, 대부분의 저소득 범죄자들은 일수벌금을 부과하는데 문제가 없다. 일일 벌금액을 그들에게 적합하게 정하고,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분할납입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그들도 다소간의 금전적 지불능력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 개인소득이 없는 범죄자

범죄자 중에는 배우자의 수입에 의존하는 주부, 주로 가족의 수입에

27) 이 부분도 미국의 일수벌금형제도 입안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다.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앞의 책, 19~21면.

의존하는 학생 또는 장애자, 현재는 가족의 수입 등에 의존하지만 취업가능성이 있는 실업자 등 본인의 수입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도 일일 벌금액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사정기준에 대하여 입안자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생각하였다.

① ‘범죄자 가족 혹은 가구 구성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때 일일 벌금액은 소득이 없는 범죄자가 마치 당해 가구의 가장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들까지 감안하여 책정된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일일 벌금액을, 단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와 무관한 타인의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사실상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② 학생 또는 취업 가능한 실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서 범죄자의 ‘노동시장에서의 가치에 입각한 잠재수입’을 평가하여 일일 벌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그의 노동가치는 비숙련 노동자일 경우 ‘법령상의 최저임금’이나 패스트푸드점 근로자, 판매직원, 짐꾼 같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고, 숙련 노동자일 경우에는 유사한 직업을 다시 얻을 수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그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직업을 통해 벌어들인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불경기에는 실제 취업이 어려워져 추정액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③ 첫 번째 방법처럼 가족 혹은 가구 구성원의 수입을 고려하되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부담을 감경해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족의 수입 중 범죄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에다가 법원이 재량으로 인정하는 범죄자의 가상수입을 합쳐서 일일 벌금액 사정기준으로 삼는다. ④ 당해 지역의 ‘일반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으로, 이는 실업률이 높고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이 방법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지역사회 전체가 고통을 겪었던 Connecticut州 Bridgeport의 일수벌금제 실험에서 채택하였었다.

3) 지하경제활동소득 혹은 범죄소득이 있는 범죄자

범죄자들 중에는 장부 기재가 없는 고용이나 범죄활동 등 지하경제를 통해 수입을 얻는 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들은 과연 일수벌금형의 대상자로 적합한가? 사실 벌금은 오래 전부터 합법적인 수입이 없는 피고인에게도 부과되어 왔다. 도박장 개장, 마약 판매, 매춘을 범한 범죄자들에

대한 벌금형이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몰수형과는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일일 벌금액을 어떻게 사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의 수입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수벌금을 부과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범죄자의 생활방식을 조사해서 그의 순 일일수입을 추정하는 것이다. 판사들은 보석금을 결정하거나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 배정 여부를 결정할 때 의례히 범죄자의 경제력을 평가하곤 하는데, 일수벌금 부과시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사실 경험있는 판사나 법원 공무원들은 범죄자의 외모나 의상의 관찰; 범죄 경력 조사; 생활여건, 자동차·텔레비전·오디오 등의 소유물, 레저활동과 같은 개인적 습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범죄자의 수입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범죄자의 수입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못할 것은 없지만, 정책 결정자들로서는 그러한 추정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자본자산을 보유한 범죄자

주식, 채권 등 자본자산(capital assets)을 보유한 범죄자가 드물기는 해도 일부 있다. 더구나 자본자산만 있고 자신의 고정수입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범죄자도 있다. 포괄적인 일수벌금형제도를 개발하려면 수입 이외에 자본자산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조사해보지는 않았다. 스웨덴은 순자본자산이 일정액을 초과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인의 실물자산을 일수벌금액 사정에 참작하는데 이 경우에도 일수 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조금씩 상향조정하는데 그치고 있다.²⁸⁾ 하지만 만약 일수벌금형제도를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를 포함하는 중죄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면 범죄자의 순수입 이외에 축적된 현금자산이나 부동산을 참작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범죄인의 일반재산을 일일벌금액 사정에 참작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참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수벌금형제도가 아무리 개인적 경제적 사정

28) 최신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으나, EU 통합 이전의 자료에 의하면 20만 크로네, 우리 돈으로 약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고려하되, 10만 크로네가 추가될 때마다 조금씩 상향조정 하였다고 한다.

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재산을 일부 몰수하는 의미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수벌금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수입을 박탈함으로써 생활의 불편이나 고통을 준다는 것일 뿐, 자신의 능력과 정당한 노력으로 축적되었고 범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반재산을 박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산규모에 비해 수입이 너무 적은 경우 약간의 고려를 하는 것은 벌금형의 실효성이나 희생평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처럼 재산으로부터 파생된 수입은 일일벌금액 사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VI. 일수벌금형제도의 문제점

일수벌금형제도는 ‘교정처우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복귀’보다는 ‘정의에 입각한 형선고’에 중점을 두는 형사사법이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일수벌금형제도의 지지자들은 이 제도를 채택하면 벌금액이 범죄자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부과되기 때문에

①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희생평등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벌금액과 형사사법제도의 권위를 받아들이기가 용이하고, ② 법원이 벌금에 대한 확대된 재량권으로써 벌금형 적용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자유형은 최후수단으로 제한되는 효과가 있으며, ③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평가와 범죄자의 경제사정에 대한 고려가 주먹구구식으로 멍뭉그러져 있는 총액벌금제도에 비하여 판결의 합리성 내지 정밀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④ 총액벌금형제도와 비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도 쉽다고 주장한다.²⁹⁾

그러나 일수벌금형제도는 근본적으로 볼 때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로 다른 형벌을 내리는 것이므로 외형상의 불균형은 오히려 더욱 부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위에 적은 일수벌금형제도의 장점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혹은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단점으로 비칠 수도 있다. 가령 ① 비교적 가난한 범죄자가 소득을 탈루하거나 재산을 은닉해온 부유한 범죄자에 비해 벌금액이 많다면 형사사법제도, 나아가 국가 시스템 전반에

29) Albrecht, H., "Day Fines : A European Perspective", NCJ Report 141422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고, ②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은 자유형의 폐해보다는 응보와 사회방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수벌금형에 처해진 자들의 재범률 또는 사회 전체의 범죄율이 예전보다 높아진다면 국가가 국민보호를 위해 정작 해야 할 일(자유형)은 하지 않고 돈(벌금형)만 밝힌다는 비난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③우리나라처럼 특별법의 남발로 인하여 범죄의 경중에 관한 위계질서가 흐트러져 있는데다가 소득과악률도 낮은 상태에서 일수벌금형제도만 도입해 놓고, 정작 판결의 합리성이나 정밀성의 관건이 되는 범죄자의 경제사정 조사는 인력·예산이나 기간의 한계로 인해 충분히 하지 못한 채 법원의 추정만 남발한다면 총액벌금형제도보다 나은 것이 없고, ④벌금액수는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증가하기 마련이지만,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 후 다소 급격한 벌금수입 증가가 있을 경우 국민들은 본 제도가 인플레이션에 잘 대응한다고 보기보다는 벌금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 내지 선도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나아가 이 제도의 궁극적 존재이유인 ‘희생평등의 원칙’조차 아래에서 보듯이 근거, 조사능력, 형선고, 그리고 벌금납부의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1) 희생평등의 원칙에 대한 의문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는 구매자의 경제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데 벌금액을 정할 때에는 왜 희생평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릇 형벌은 행위의 불법이나 행위자의 책임의 한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하며 경제적 사정처럼 범죄와 무관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희생평등의 원칙은 행위의 불법이나 행위자의 책임보다는 행위자에게 미치는 형벌의 효과에 중점을 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수입을 가진 사람은 10배의 벌금을 내야 그가 느끼게 될 경제적 고통이 평등해질 것이라고 의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야말로 다른 사람보다 10배 노력하여 10배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불성실한 생활태도로 인해 수입이 시원치 않은 사람보다 10배의 벌금을 내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또한 노상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인 두 사람의 수입을 조사하여 한 사람은 10만원, 다른 사람은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을 때 사람들은 절대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공평하다고 느낄까? 그보다는

두 사람에게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공평할 뿐 아니라 절대액이 너무 작으면 누구에 대해서든 형벌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요약하자면 희생평등의 원칙은 일수벌금제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형벌을 정할 때 범죄와 무관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왜 고통을 형벌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 본인의 승복 없이 외부에서 강요된 평등이 효과적이거나 바람직할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2) 경제적 사정의 조사능력에 대한 의문

사실 범죄와 무관한 경제적 사정을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의 하나로 삼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나마 희생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지 못하다면 희생의 평등은 커녕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고수입의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가 심각할 뿐 아니라 지하경제의 규모도 무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소득이 100% 노출되는 셸리리맨은 ‘봉’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졌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조회한 몇 가지 자료만으로 범죄자의 개인적 경제사정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을까? 가령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셸리리맨이 소득이 연 2,000만원이라고 거짓 신고한 한의사보다 평소 더 많은 세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낸데다가 벌금까지 더 많이 내야 한다면 평소의 피해의식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득과 악율도 낮고, 판결전 조사제도도 일반화되지 못한 상태여서 그 많은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을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정확히 조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일수벌금형제도의 취지가 타당하고 다른 나라도 잘 시행하고 있으니 일단 도입하고 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이 제도는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시행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판사들의 벌금액 결정에 관한 권한 축소의 문제

많은 범죄에서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고, 총액벌금형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판사들은 벌금형의 선택여부와 액수 결정에 매우 큰

권한을 누리고 있다. 판사들은 특히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양형기준표상의 벌금일수’라든가 타기관의 조사자료에 따른 ‘일일 벌금액 사정’이 결국은 법원이 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낄 것이며, 더구나 개인의 경제사정에 대한 조사결과가 부실할 경우 이제도 자체를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경험있는 판사들이 조사된 데이터보다 범죄자의 의상이나 외모 관찰, 소유물이나 레저활동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자신이 짐작한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 경우 일수벌금형제도는 판사가 마음속으로 정한 벌금 총액을 벌금일수와 일일벌금액에 적당히 끼워 맞추는 번잡성만 초래할 수도 있다.

4) 벌금형의 일신전속성에 대한 의문

벌금형도 형벌이므로 이론상 일신전속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제3자로부터 빌리거나 얻어서 납부하더라도 사실상·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경제적 고통을 범죄자가 감당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일일벌금액을 사정할 때에는 주변 제3자의 경제사정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가령 범죄자의 현재 수입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아서 소정의 공식에 따라 벌금의 절대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었는데, 범죄자가 그 정도의 벌금은 부담이 되지 않는 부유한 친척이나 친구에게 빌려서 손쉽게 납부한 경우 희생평등의 원칙이라는 본 제도의 취지도 살릴 수 없고, 나아가 벌금이 형벌로서의 진지성이나 엄중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요컨대 어차피 일신전속성이 약한 벌금형의 경우 일수벌금형제도가 희생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다는 주장은 허구적인 것일 수도 있다.

VII. 맺 음

일수벌금형제도는 우리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제도이지만 등장 배경이나 이념적·현실적 장점, 그리고 시행중인 국가의 경험 등에 관해 꽤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일수벌금형제도의 장점을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당장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에

서 일수벌금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적정벌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한 뒤 일수벌금형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꼬집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해 단순히 현행법상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에 대해 법원이 개인의 경제사정을 아는 만큼 반영하여 재량권을 확대하는 제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수벌금형 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 조사에 대한 법원이나 검찰의 만족도가 다소 향상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제도는 동일한 행위를 했더라도 사람마다 벌금액이 달라지는 불평등한(!) 외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령 법원이 범죄자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조사할만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울 좋은 이념에 현혹되어 선불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그동안 모르고 넘겼던 문제점을 파내어 법원의 권위나 신뢰에 상처만 입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일수벌금형제도 자체에 대한 국내 학계의 의견은 긍정론이 우세하다고 하겠지만³⁰⁾ 벌금형의 불평등을 피하고자 하는 제도 자체의 취지에는 찬동하면서도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지불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유보론도 만만치 않다.³¹⁾ 실제 문헌연구를 통해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일수벌금형제도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요하고,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웬만큼 잘 운영하지 않고서는 희생평등의 원칙을 실현해 내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³²⁾ 따라서 제도운영에 필요한 여건이 확보될 때까지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30) 이재상, “벌금형제도 재고”, 법조, 1977.1. 123면; 김기춘, 형법개정시론, 삼영사, 1984, 396면

31) 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996, 가을, 130면.

32)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로는 박기석, ‘벌금형 개선방안’ 참조.

참고문헌

- 강동범,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안 - 벌금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5호, 1990
- 김기춘, 형법개정시론, 삼영사, 1984
- 박기석, “벌금형 개선방안”
- 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996, 가을
- 이영란, “벌금형제도 소고 : 벌금양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9호, 1997
- 이재상, “벌금형제도 채고”, 법조 1977.1.
- Albrecht, H., “Day Fines : A European Perspective”, NCJ Report 141422
-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How to Use Structured Fines(Day Fines) as an Intermediate Sanction, 1996
- Cole, George F., Barry Mahoney, Marlene Thornton, and Roger A. Hanson, The Practices and Attitudes of Trial Court Judges Regarding Fines as a Criminal Sanction, NIJ, 1987
- Grebing, G., Fine in Comparative Law - A Survey of 21 Countries, 1990
- Hillsman, Sally T., “Fines as Day Fines”, in Michael Tonry and Norval Morris eds., Crime and Justice : A Review of Research, 1987
- Moxon D., M. Sutton and C. Hedderman, Unit Fines : Experiments in Four Courts, 1990
- Turner, Susan and Joan Petersilia, Day Fines in Four U.S. Jurisdictions, 1996

A Study on Day Fine System

Lee, Ki-Hun*

The sanction of fine, even if the same amount of money is imposed for the same act, cannot satisfy the 'principle of equal sacrifice' because the defendant with less economic means and ability would feel it the more painful. Day fine system was designed to solve the problem, by considering net income and other economic conditions of each defendant in valuing the fine units.

According to the papers and documents, however, developing day fine program casts many complicated questions like setting goals and priorities; analyzing the real sentencing patterns of the court; ranking the offenses by severity, and making subcategories if necessary; getting financial information about the defendant, and keeping its confidentiality; establishing appropriate unit values; fining offenders with low income, with no income, and with underground or criminal income; and so on.

Though the above-mentioned questions are all cleared, day fine system have some more substantial doubts.

1. Day fine system may look more unfair, since the total fines for similar acts may considerably differ according to defendant's economic conditions.

2. In determining fine amount, why should we consider defendant's economic conditions that has nothing to do with crime? And why should we take economic affliction as the main purpose of fine?

3. The success of day fine system largely depends on the accuracy of the inquiry of the defendant's economic conditions. Are we able enough to get the exact data at relatively low cost? If not, day fine

* Professor, Department of Law, Myongji University, Ph.D. in Law

system may aggravate the inequality, and may undermine the citizen's confidence in criminal justice system.

4. Unlike jail sentences, money can be borrowed from other people. Therefore we cannot make sure that the defendant really suffered economic sting.

5. If judges do not believe the report about defendant's financial situation, they may operate the system just formally, i.e., only on external appearance.

Day fine system resulted in failure in England and Wales, and is under experimentation in several states of the U.S.. It is not yet introduced in Asian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China. In my opinion, day fine system does not just eliminate defects of the existing total-sum fine system, but replace them with another defects. And realizing its ideal may not be easy in practice. Therefore, at least until time the general conditions are provided, there seems to be no reason to make haste in adopting day fine system.

주제어 : 일수벌금형제도, 희생평등 원칙, 벌금일수, 일일벌금액 사정

Keywords : day fine system, principle of equal sacrifice, unit scale, valuing fine units